

마. 교원의 대학원 수강

- 1)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주간대학원 수학이 가능함
-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는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될 수 없음
- 3) 교원은 근무시간 내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할 수 있음. 이 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복무관리.[연수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 내에서 학교의 여건, 연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기간 유지 범위 내에서 허가]
※ 야간제대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대학원의 수업시간 대에 운영되는 등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주간대학원의 복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 4)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반됨

■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사례】 대학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관련(교원07000-426, 1999.12.16.) 교원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본인의 희망에 의한 대학원을 수강하는 것은 특정한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보기 어렵고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연수이므로 근무상황부에 '출장(연수)'로 기재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없음

바. 방학 중의 근무

- 1) 여름·겨울·학기말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2)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1조)
- 3) 방학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사. 학교장 복무관리(2023. 7. 17.)

- 1)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가) 사전에 상급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나이스 공람 등으로 신청
 - 나) 나이스 공람 신청 시 신고내용[행선지, 연락처, 기간, 사유(연가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목적지란에 휴업기간, 부재중 학교관리자 정보 기재) 등]